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30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 지 민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2 |
| 1.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공개의 의무화 ..... | 2 |



## I. 개요

### 1.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430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문진석의원 등 16인
- (2) 제 안 일 : 2024. 9. 30.
- (3) 회 부 일 : 2024. 10. 2.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사유로 인해 농수산물 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 등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용,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과 같은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

## II. 주요 내용별 검토

### 1.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공개의 의무화

#### 가. 개정안의 내용

□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유·관리하고 있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정보의 범위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정보공개를 현행 훈시적·재량적 규정에서 의무적 규정으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

| 현행                                                                                                                                                   | 개정안                                                                                                                                                    |
|------------------------------------------------------------------------------------------------------------------------------------------------------|--------------------------------------------------------------------------------------------------------------------------------------------------------|
| <u>제90조의2(정보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 <u>제90조의2(정보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u><br><u>1.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u> |

|                                                                        |                                                                                                                                                                                                                                                                  |
|------------------------------------------------------------------------|------------------------------------------------------------------------------------------------------------------------------------------------------------------------------------------------------------------------------------------------------------------|
| <p>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u>정보의 범위, 제공 방법 및 절차</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u>용</u></p> <p>2. <u>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u></p> <p>3. <u>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u></p> <p>4. <u>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u></p> <p>② -----</p> <p><u>정보의 제공방법</u>-----</p> <p>-----</p> <p>-----.</p> |
|------------------------------------------------------------------------|------------------------------------------------------------------------------------------------------------------------------------------------------------------------------------------------------------------------------------------------------------------|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90조의2<sup>1)</sup>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1) 「식품위생법」

제90조의2(정보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를」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보의 범위,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sup>2)</sup>에서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①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용, ②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③ 국내외 위해 우려 식품등에 관한 정보, ④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로 구체화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수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식약처가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하게 하려는 것으로,

사전적 정보공개 강화를 통하여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낮추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정보공개 종류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정보공개와 청구인의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4조의2(정보공개) ①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용
2.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3.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청이 없더라도 행정청이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사전적 정보공개가 있음<sup>3)</sup>.

□ 다만, 개정안 제90조의2제3호의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같은 조 제4호의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의 경우 공개여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 또한 현행법령에 따라서도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현재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sup>4)</sup> 및 수입식품정보마루<sup>5)</sup>를 통하여 국내식품 부적합, 수입식품 부적합, 해외직구 위해식품목록, 부정물질 함유 외국위해식품 정보 등 국내외 위해우려 식품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며,

특히 수입식품 방사능검사와 관련하여서는 식약처 수입식품방사능 안전정보<sup>6)</sup>를 통하여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현황, 삼중수소 모니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4)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http://www.foodsafetykorea.go.kr))

5)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impfood.mfds.go.kr](http://impfood.mfds.go.kr))

링 현황, 반복검출 제품정보 등이 공개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주요 정보 공개·제공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주요 정보 공개 현황<sup>7)</sup> >

| 구분                         | 공개내용                          | 공개 세부내용                                                                 | 공개매체      | 공개 근거 법률                    |
|----------------------------|-------------------------------|-------------------------------------------------------------------------|-----------|-----------------------------|
| ①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용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촉 현황               | 분과별 심의위원 구성 현황                                                          | 식약처 홈페이지  | 식품위생법 제90조의2<br>행정위원회법 제15조 |
|                            | 분과별 심의 계획 및 결과                | 사안별 심의 개최 계획 및 의결사항 (회의록)                                               | 식약처 홈페이지  | 식품위생법 제90조의2<br>행정위원회법 제15조 |
| ②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및 결과 | 위원회 개최 계획 및 심사 결정 사항                                                    | 식약처 홈페이지  | 식품위생법 제90조의2                |
|                            | 유전자변형식품등 승인 현황                | 품목명, 신청자, 특성, 용도, 승인일                                                   | 식품안전 나라   | 식품위생법 제90조의2                |
|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결과 보고서         | 품목별 심사결과 보고서                                                            | 식품안전 나라   | 식품위생법 제90조의2                |
| ③ 국내외 위해 우려 식품등에 관한 정보     | 회수판매중지                        | 회수식품등의 세부 정보 (회수사유, 제품명, 업체명, 소비기한 등)                                   | 식품안전 나라   | 식품위생법 제90조의2                |
|                            | 국내식품부적합                       | 정부수거검사 부적합 제품 세부정보(부적합내역, 제품명, 업체명, 소비기한 등)                             | 식품안전 나라   | 식품위생법 제90조의2                |
|                            | 수입식품 부적합                      | 제품명, 제품 유형, 해외제조업소·해외 작업장·수출업소, 제조국·생산국, 부적합 내용, 부적합 판정일 및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 | 수입식품 정보마루 |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제21조         |

6)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홈페이지(radsafe.mfds.go.kr)

|                                       |                           |                                                                    |          |                        |
|---------------------------------------|---------------------------|--------------------------------------------------------------------|----------|------------------------|
|                                       | 해외직구 <b>위해식품 목록</b>       | 제품명, 제조국, 제조회사, 제품사진, 원료 또는 성분, 그 밖에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 식품안전 나라  |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 제25조의2 |
|                                       | <b>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b>   |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원료·성분의 명칭,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지정 또는 지정해제 일자                | 식약처 홈페이지 |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 제25조의3 |
|                                       | 부정물질 함유 <b>외국 위해식품 정보</b> | 해외 부정물질 함유식품 정보 중 국내 인터넷(네이버쇼핑, 이베이옥션) 판매 제품 정보 (제품명, 사유, 제품사진 등)  | 식품안전 나라  | 식품위생법 제90조의2           |
| ④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 <b>수입식품 중 방사능 검사현황</b>    | (일일검사현황) 품목명, 제조생산지, 제조일자(소비기한), 수입중량, 방사능 검사결과                    | 식약처 홈페이지 | 식품위생법 제90조의2           |
|                                       |                           | (방사능 주간보도자료) 품목군별 방사능 검사결과(건수, 중량, 조치결과 등)                         | 식약처 홈페이지 |                        |
|                                       | <b>국내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b>  | 제품명, 원산지, 수입국, 수거장소, 방사능 검사 결과                                     | 식약처 홈페이지 | 식품위생법 제90조의2           |

## 다. 관계 부처 의견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중검토

- 위해 우려가 제기된 식품등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될 경우 공개할 정보의 범위가 포괄적이며, 현행법상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의무화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493

7)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